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 및 평가

1999. 5

제성호 (북한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배경	2
1. 채택배경	2
2. 입법취지	3
III. 「인민경제계획법」의 주요내용	6
1. 인민경제의 질서 확립과 통일적 규율	6
2. 북한식 실용주의 추구	11
3.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
IV. 「인민경제계획법」의 특징 및 채택 의미	15
1. 「인민경제계획법」의 성격 및 특징	15
2.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 의미	19
V. 종합평가 및 전망	22
1. 종합평가	22
2. 전망	23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계획법」 전문	
<부록 2> 「인민경제계획법」 관련 양형섭의 보고 요지	

I. 문제제기

- 북한은 1999년 4월 7일~9일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정일을 비롯한 당정 고위간부 및 전체 대의원 687명 중 6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4.7)하는 한편, 둘째 의안인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할데 대하여’에 관한 양형섭 대의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을 진행하고 6장 48조의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4.8)하여 4월 9일부로 공포하였음.
- 이 「인민경제계획법」은 북한당국이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바, 향후 북한경제의 전개방향을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

II.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배경

1. 채택배경

- '90년대 이래 북한에서는 식량난, 에너지난 등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각급 계획기관들의 중앙집권적 계획화기능 내지는 통제적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왔음.
- 공식경제부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비공식부문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그 여파로 경제부문에 '자유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특히 북한주민들의 생존 유지를 위해 「장마당」(농민시장)과 같은 초보적인 시장경제 요소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태
- 이와 함께 계획경제부문의 난맥상 심화, 경제특구 지정 등 일부 개방조치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미비, 비공식부문의 확대에 의한 사회일탈현상의 만연 등 체제위협요인이 가중되게 되면서, 집권엘리트 계층 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동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 경제분야 헌법조문들을 일부 수정하였음.

-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사회협동단체로 확대(제20조)
- 개인소유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 범위 확대(제22조 및 제24조)
-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제33조)
- 국영무역제에서 대외무역의 주체를 사회협동단체로 확대(제36조)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 창설·운영 장려(제37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동안 경제난으로 이완된 계획부문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 지금과 같은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 추세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인식
- 특히 공식경제부문의 계획화기능과 통제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절감

○이러한 필요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의 침투를 철저히 배격·방지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계획부문의 규제법으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2. 입법취지

가. 경제계획부문의 규율 확립

○양형섭은 법안 상정 보고를 통해 “계획에 대한 온갖 무책임하고

비규율적인 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주장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그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일군들은 경제계획화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총화에서 계획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 특히 “계획작성에서는 주관주의와 권위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을 통해 극도로 이완된 경제계획부문의 규율 및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나. 자유화·분권화 경향 차단

○양형섭은 법안 상정 보고에서 “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그 어떤 자유화나 분권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계획권 밖에서 어떤 경제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음.

○이 같은 자유화·분권화의 불허방침 표명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유주의 경향의 침투·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비공식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됨.

- 이는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이 최근 농민시장 번창, 암거래 성행 등 자본주의 요소의 침습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기 위한 교육지책임을 시사

다. 각 부문의 경제건설에의 적극 동참 유도

○현재 북한지도부는 '9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관, 단체, 기업소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제건설에 일로 매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각 경제주체들이 안이하게 행동해 왔던 사실을 반성케 하는 교육적·심리적 효과 외에도 이들이 경제건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Ⅲ. 「인민경제계획법」의 주요내용

1. 인민경제의 질서 확립과 통일적 규율

가. 입법목적: 인민경제의 질서 확립을 통한 계획적 발전 도모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천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제2조)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 인민경제계획의 성격을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제1조 1문),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제4조 1문)이라고 명시

○이러한 규정은 이 법의 제정목적이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의 통제하에 둬으로써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파탄상태에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있음을 의미함.

나. 중앙집권적 지도에 의한 경제계획의 통일적 규율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밑에 인

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국가의 일관한 정책(제3조)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 같은 국가정책에 맞게 경제계획부문의 규율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제11조).
- 노력·설비·자재·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 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계획에 반영 불가(제20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기관에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수령 불가(제25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할 의무 부담(제27조)
-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불허(제36조).
-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제45조).
- 인민경제계획상의 노력·설비·자재·자금으로 계획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 또는 건설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실행실적으로 불인정(제46조).

○상기 여러 내용 중에서 특히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노력·설비·자

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제25조)은 자금·자재의 수급을 통제하여 낭비와 비리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은 생산할 수 없고,” “생산과 건설을 할 경우 중지시키며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최근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되지 않은 상품이나 불량품을 생산, 암거래하는 행위를 적극 방지하려는 의도 내포

다. 인민경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구체화

○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에 관해 ①작성기준(제11조 2문), ②작성준비(제12조 1문), ③작성방법(제13조~제16조, 제19조 1문) 등에 관해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그간의 관행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음.

-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전망계획」은 생산적 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 등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제14조 및 제15조).

○ 인민경제계획의 시행절차로 비준(심의·승인)과 시달, 기관·기업소·단체의 인민경제계획 구체화 및 등록 등을 명기하고 있음.

-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심의·승인받아(제21조 2문).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

표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집행할 단위(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함(제24조 1문).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며(제24조 2문), 이를 제때에 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제25조).

* 「인민경제계획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민경제계획 수립체계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이 정리 가능

○또한 인민경제계획의 실행과 관련하여 실행의무(제27조 2문), 실행의 직접적인 담당자(제28조 1문), 인민경제계획의 실행방법(제29조, 제30조), 우선 생산제품(제32조), 인민경제계획의 엄격한 적용(제36조)을 명시하는 한편,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의 총화와 평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표 1: 인민경제계획 수립체계>

계획작성단계	내 용	주관기관	비 고
준비단계	·경제계획 작성을 위한 조직계 획서 수립 및 계획작성사업 조직 ·기초자료준비	국가계획위원회, 기 관, 기업소, 단체	
	·인민경제계획 지표 분담.	국가계획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 에 분담
예비숫자단계	1. 예비숫자 작성 및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	상급기관과 국가계 획위원회에 제출
	2. 예비숫자 검토	국가계획위원회	
통제숫자단계	1. 통제숫자 취합·작성	국가계획위원회	
	2. 통제숫자 비준	최고인민회의(국가 인민경제계획) 또 는 지방인민위원회 (지방 인민경제계 획)	·내각(지방 인민위 원회)에서 토의 ·국가 인민경제계획 은 최고인민회의 에서 심의·승인하 되, 휴회중에는 상 임위원회에서 심 의·승인
	3. 통제숫자 시달	국가계획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 에 하달
계획숫자단계	1. 경제계획 초안 작성 및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	상급기관과 국가계 획위원회에 제출
	2.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 작성	국가계획위원회	내각에 제기
지도 및 통제	지도사업	국가계획위원회	내각의 통일적 지도
	감독·통제사업	국가계획위원회와 해당감독통제기관	

- * 예비숫자: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을 타산하여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숫자
 - * 통제숫자: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방향과 경제발전 수준 및 규모를 규정한 당과 국가의 지령, 공장기업소에서 올랐은 예비숫자에 기초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
 - * 계획숫자: 숫자로 표시된 계획과제의 규모, 통제숫자에 기초하여 작성(1985년 사회과학출판사가 간행한 「경제사전」 참조)
- △ 과거에는 계획숫자단계에서 인민경제계획 초안이 작성되면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관행을 미루어 볼 때 이 단계에서도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북한식 실용주의 추구

가. 현실적 조건과 경제적 실리 중시

○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제6조)고 명시하여 경제관리에서 계획의 철저한 집행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는 내용상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아울러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

○ 또한 “기관·기업소·단체는 수출계획의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제32조)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은 인민경제계획이 외화난 극복에도 착안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북한당국의 입장과 일맥상통

나. 계획부문의 과학성 및 전문성 제고

○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할 때 「객관적 조건의 타산과 실리보장의 원

칙」에서 예비실사, 통제실사, 계획실사를 잇는 방법으로 현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계획부문의 과학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음.

- 특히 “노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같은 계획화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 타산하고 맞물린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계획화의 주요원칙임을 명기

○인민경제계획이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토대의 준비와 과학성 및 체계성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음.

-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고(제8조), 인민경제계획일군 양성체계를 바로 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육성(제9조)하는 한편,
- 노력·설비·자재·자금의 이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

○나아가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도 ‘기관과 기업소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 시킨다고 규정하여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 전문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3.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가.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엄격한 지도·통제

-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지도체계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우선 내각은 최고의 책임기관으로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심의·비준 및 실행 등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도를 담당하고,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해야 함(제43조).
 - 아울러 국가계획기관은 내각의 지도하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하급기관들이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제44조 참조).
-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지방정권기관은 기관·기업소·단체의 인민경제계획사업(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하게 됨(제45조 2문).
- 이러한 규정들은 인민경제계획 수립과정에서 내각 및 해당 기관의 지도·통제를 명시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의 엄정한 집행 및 실

효성 증대를 겨냥하는 한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나. 생산계획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인민경제계획법」 제6장에서는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및 해당 일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이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유용·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제47조)시키도록 하고 있고,
-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48조)고 하여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영책임자나 근로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생산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들에게 인민경제계획 목표의 달성을 다그치기 위한 수단적 규정이라고 할 것임.

IV. 「인민경제계획법」의 특징 및 채택 의미

1. 「인민경제계획법」의 성격 및 특징

가. 사회주의법제 정비의 일환

-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은 김일성 사후('94.7)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회주의법제 정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은 김일성 사후 지금까지 양어법, 농업법, 발명법, 공중위생법, 에네르기관리법, 무역법, 의료법, 도로법, 물자원법, 가격법, 전력법, 재정법, 수산법 등 14개의 경제법들을 제정·정비
- 한편 「인민경제계획법」은 최고인민회의 10기 회의(1차: 1998.9.3~9.4, 2차: 1999.4.7~4.9)가 제정한 최초의 법이라는 사실이 주목됨.

나. 김정일이 발기하여 제정한 법

- 이번에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김정일이 직접 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하는 등 북한이 이 법에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
- 양형섭은 법안 상정 보고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이 ‘김정일의 지

시에 의해 김일성이 창시한 계획화 정책을 집대성한 법전'임을 강조하였는 바, 이는 동 법이 김정일의 지대한 관심과 직접 주관 하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와 관련, 양형섭은 “김정일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계획경제가 마치도 생산력 발전에서 그 어떤 문제라도 있는 듯이 떠벌이고 있던 시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완벽하게 정식화하였다”고 역설

○또한 「인민경제계획법」이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그 동안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체 제 정하였던 전력법, 무역법, 양어법 등 기존의 각종 경제법들과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동 법에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임.

다. 북한 최초의 사회주의 「계획법」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에 관한 체계화된 법규가 없었는 바, 금번 「인민경제 계획법」은 북한이 최초로 마련한 사회주의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법의 성격에 관해 양형섭은 「인민경제계획법」을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전’이자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며

혁명적인 계획법전”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 또한 「인민경제계획법」은 “경제의 자유화바람을 철저히 막고 계획적 관리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당과 국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한 우리식의 혁명적인 계획법”이라고 강조

라. 계획분야의 성과를 법제화한 입법

○ 「인민경제계획법」은 김일성·김정일지시와 그 동안 「국가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작성·하달하던 경제계획의 시행방법과 목표책정 등에 대한 내부규정과 내각 재정부문의 방침을 망라하여 법제화한 것임.

- 동시에 「인민경제계획법」은 ‘지난 기간 계획사업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입법(양형섭 보고)

○ 따라서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법규를 새로이 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간 인민경제계획사업에 적용되어 왔던 원칙·절차·방법을 입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당의 지도 및 비준 관행이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함.

- 북한체제는 당이 국가 및 사회를 지도하는 사회주의정치체제 (북한헌법 제11조 참조)로서 '90년대 이후 북한이 채택한 대부

분의 법들에서 당의 역할을 명기한 예는 거의 전무

- 이와 관련, 양형섭은 「인민경제계획법」에 관해 당의 계획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주체적인 법전이라고 강조하고, 인민경제계획을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
- 따라서 「인민경제계획법」의 규정만을 보고 당의 역할이 약화 또는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민경제계획 수립에 대한 당적 지도와 우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 이와 관련, 「경제사전」(1985년 사회과학출판사 간행)은 “계획 작성절차와 방법”(p. 327) 항목에서 ‘국가계획위원회는 하부 기관에서 올라온 계획초안을 대조·확인하면서 완전한 계획을 묶어 당과 국가의 비준을 받은 다음 아래 단위들에 시달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과거의 인민경제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당의 비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음을 시사

마.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정을 포괄한 기본법

-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화의 목적, 원칙, 체계와 방법, 계획수립 및 실행과정, 실행총화 및 지도·통제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에서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인민경제계획법」에 의거, 추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세칙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의미

가. 경제계획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 완비

- 지금까지는 모든 계획화사업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기 보다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집행되어 왔으나, 금번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으로 향후 인민경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게 될 것임.

- 따라서 이 법의 채택은 김일성·김정일교시와 과거의 계획관행을 법으로 제도화했다는 의미 외에 인민경제계획에서 ‘사회주의 준법성’의 요구를 구현한 것이라는 의미 함축

- 앞으로 인민경제계획은 자기의 독자적인 법률에 입각하여 작성과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은 다른 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인민경제계획의 실시를 강력하게 지도·통제 가능

나. 경제운영체제 및 공식부문의 생산활동 정상화

-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은 김정일체제의 공식화와 헌법개정에

맞추어 지난 시기에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제운영체계를 내각을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양형섭은 보고에서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이 경제계획부문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그는 “계획법은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면서 ...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임을 언급

○ 이러한 언급은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이 경제난과 식량난의 와중에서 비공식적 경제부문이 확대되면서 마비상태에 빠진 공식 경제부문의 활동을 정상화·활성화시키겠다는 북한당국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 사회통제 강화 및 시장경제요소의 안정적 관리

○ 북한당국이 철저한 인민경제계획의 집행을 통한 자유화·분권화 경향의 차단을 천명한 것은 비공식부문의 확대 과정에서 북한사회 전역에 만연된 자본주의적·자유주의적 경향을 강력하게 억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력을 회복·강화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 물론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이 사회 및 주민통제라는 규제적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측면도 내포

○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이 갖는 이러한 사회통제적 측면은 “일군들의 계획 규율이 문란한데서는 ... 자본주의적 요소가 스며들 수도 있다는데 대하여 높은 각성”을 가질 것을 역설한 양형섭의 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라. 추가적 개혁·개방에 대비한 내부정비

-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불가피한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내부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은 경제통제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적 관리체제 고수라는 일차적인 목표와 함께 개혁·개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이차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V. 종합평가 및 전망

1. 종합평가

- 「인민경제계획법」은 북한이 최초로 제정한 사회주의 계획부문의 규범적 지침이라 할 수 있으나, 계획부문에 대한 김 부자의 현지 지도나 관행을 법적으로 성문화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기존의 인민경제계획 수립·운영체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 김정일정권 출범 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정비 및 계획화 기능의 제고 차원에서 계획부문의 관행을 종합 정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한 것은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공식 경제부문의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 파탄된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의 이면에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고 제한적·부분적이거나 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임.

- 엄격한 계획경제 고수 방침은 개방과 교류 확대에서 오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책(모기장 이론)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기업소 관리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으나(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참조), ‘가격자유화’와 ‘부분적인 사유화’와 같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없이 기업소와 같은 하부단위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책만으로는 경제회복의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임.

○또한 경제관리에서의 규제 강화로 인한 융통성 결여와 경제계획을 뒷받침할 자재·원료 등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인해 「인민경제계획법」의 효과적인 실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부문의 엄격한 실행 곤란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불배제

2. 전망

가. 북한의 경제정책방향 전망

○현재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에 따른 계획질서 이완으로 경제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금년도를 ‘전환기’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경제위기 의식

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고인민회의에서 양형섭은 보고를 통해 “오늘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라고 언급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계획부문을 질서정연한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핵심고리로 인식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이완된 체제 내부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임.

- 이와 관련, 「인민경제계획법」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반면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겨냥한 처벌조항이 명시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개방의지가 미약함을 시사

○또한 북한이 최근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국가의 계획·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온 비공식부문의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회생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비공식부문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가능성도 존재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북한이 김정일체제의 공식화와 헌법개정 등으로 정치체계를 정상화한 후인 만큼 향후 경제운영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음.

- 당 창건 55주년(2000.10.10) 및 김정일 60회 생일(2002.2.16)을 감안할 때 북한이 조만간 중·장기 인민경제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농후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정일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이를 기초로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민경제계획법」은 종래의 계획부문의 관행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한 만큼 예전과 같은 ‘부분적·점진적 경제개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나.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

○「인민경제계획법」은 자본주의 요소의 침투를 방지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 바, 이 법의 채택으로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이 다소 감소·위축되는 면이 있을 것임.

-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은 북한의 개방정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을 계기로 생산계획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 법은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고수를 위한 내부 단속에 주력하면서, 극심한 경제난 타개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남북교류협력 및 대외 투자유치 등 대외경협을 확대하는 「이원화된 경제운용방식」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계획법」 전문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 제1조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 없이 높일 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 제3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밑에 인민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 제4조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도록 한다.
- 제5조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사업의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서 균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 실행규율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7조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 계획사업 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계획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 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일군 양성체계를 바로 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10조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계획 작성의 기준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이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제13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 지표의 분담은 국가적 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15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같은 경제발전의 요인을 타산하여 인민경제 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6조 인민경제 현행계획의 작성은 예비숫자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타산하여 예비숫자를 묶어야 한다.

예비숫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숫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통제숫자를 묶어 해당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받은 통제숫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숫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제정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 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21조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22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4조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26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정형을 요해하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27조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인민경제계획실행의 직접적 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계획과 그 실행방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은 어김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해당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월별분할은 분기 인민경제계획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행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획실행준비를 하지 않고는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없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의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협동생산계획의 예견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노동행정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실현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35조 내각과 해당기관은 생산지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대책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경제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총화

제37조 인민경제계획 실행총화를 바로 하는 것은 계획규율을 강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38조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기, 연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와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순별로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례로 인민경제계획실행에 대한 완전 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계획실행에 중심을 두고 연관된 지표들의 계획실행정형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40조 인민경제계획 실행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실행실적으로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은 공시할 수 있다.

제6장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발달, 실행과 그 총화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며 인민경제계획 실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47조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유용,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8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 2> 「인민경제계획법」 관련 양형섭의 보고 요지

1.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 의의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심의·채택하게 되었음.
- 김정일은 우리나라(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을 발기하고 법초안의 작성과 완성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계획경제가 마치도 생산력 발전에서 그 어떤 제한성이라도 있는 듯이 떠벌이면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끌어들이고 있던 시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완벽하게 정식화하였음.
- 「인민경제계획법」은 지난 기간 계획사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구체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 계획법전임.
 - 또한 「인민경제계획법」은 당의 계획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주체적인 법전이며, 경제의 자유화 바람을 철저히 막고 계획적 관리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당과 국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한 우리식의 혁명적인 계획법임.

2.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방향

- 북한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 경제임.
- 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그 어떤 분권화·자유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것임.
-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도록 한다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인민경제계획화의 원칙은 계획을 생산자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 계획화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 타산하고 맞물린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계획으로 되게 하는 것임.
-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해야 함.

3. 관련 계획부문의 과업

- 계획에 대한 온갖 무책임하고 비규율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들은 「인민경제계획법」을 깊이 연구·학

습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 국가계획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들은 인민경제 계획화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총화에서 계획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집행해야 함.

- 계획작성에서 주관주의와 권위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생산자대중 속에 들어가 군중토의를 실속있게 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기관과 기업소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함.

○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국가계획을 제멋대로 변경시키거나 계획권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자그마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계획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법적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하게 지도·통제하여야 함.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외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전망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공저	인식조사 결과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6,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6,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 및 평가

統一情勢分析 99-02

發行處 統 一 研 究 院

編輯人 統一研究院 北韓經濟社會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6(代), FAX : 901-2544

印刷處 成林印刷 전화 : 704-8877

印刷日 1999년 5월 일

發行日 1999년 5월 일
